

강릉시의회 공고 제2024-19호

「강릉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4월 11일

강릉시 의회의장

강릉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정이유

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
나.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(안 제5조)

다.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지원사업 및 교육(안 제6조~제7조)

라.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(참조: 의회사무국 산업전문위원/☎033-640-4034)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다. 기타 의견

[보내실 곳]

- 우 편: (25522)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(홍제동) 강릉시의회 의회사무국
- 이메일: ps7430@korea.kr
- 팩 스: 033-640-4070

- 붙임 1. 강릉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.
2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. 끝.

[붙임 1]

강릉시 조례 제 호

강릉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 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농업인”이란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.
2. “농업작업”이란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.
3. “농업근로자”란 농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.
4. “농업작업안전재해”란 「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안전재해를 말한다.
5. “농업인안전보험”이란 「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인안전보험을 말한다.
6. “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”이란 「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

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강릉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인정한 자를 말한다.

제3조(적용대상) 이 조례에 따른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사업의 대상은 강릉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내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업인, 농업법인, 농업근로자, 무급가족종사자를 말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
제5조(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.

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의 중점 기본방향 및 목표
2.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
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지원사업)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·조사 및 보급·지도
2.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에 필요한 사업
3. 농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

4.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

5. 농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

6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7조(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교육)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「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6조의 각 호에 따른 교육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.

제8조(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) ①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.
②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

제9조(사업의 위탁)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 및 제7조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10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·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붙임 2]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

법 규 명 :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연 락 처 :

제·개정안 내용	의 건	비 고